2024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종합보고서

사업장명: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4. 11 .

수행기관명: 노무법인 우광

<목 차>

I. 총평

II. 사업장 안전보건 현황 파악

III. 컨설팅 및 개선 내용
 1. 위험성평가 시범 실시
 2. 위험성평가 직접 실시
 3. 경영자 리더십
 4. 근로자 참여
 5.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6. 비상시 조치
 7. 도급·용역근로자
 8. 평가·확인 관리

IV. 향후 개선사항

V.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55개) 결과

VI. 부록
 1. 관련 법령 및 판례
 2. 필요 서식

Ⅰ 총평(1~2쪽)

□ 사업(장) 특징

- 본 사업장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상시 근로자 19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없습니다. 시설관리자 1명, 영양사 1명이 있으며, 나머지 근로자는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없으며,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상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대책(위험성평가 실시)

- 본 사업장의 주요 유해·위험요인으로 조리업무의 경우, ▲조리 시 뜨거운 냄비, 증기, 기름 등에 의한 화상 위험, ▲조리 중 가위, 칼 등 조리도구에 의한 자상 위험, ▲바닥 미끄러짐으로 인한 전도사고 위험이 있고, 시설 및 영선업무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추락, 낙하위험,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동일한 자세로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VDT증후군 발생 위험, ▲고객응대 업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발생 위험 등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조리실 공간 내 “화상주의” 안전보건 표지 부착, ▲작업자에게 조리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작업, 개인보호구 지급, ▲작업전후 스트레칭 교육 실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매뉴얼 작성 및 보호 포스터 부착, 전화연결 시 근로자 보호 연결음 설치 등이 있습니다.

□ 주요 컨설팅 사항

- 본 사업장은 보건 및 사회복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연수구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지역주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로 유해·위험기계기구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업무특성상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비교적 낮은 사업장입니다. 또한, 매년 시설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해당 계

획서에는 시설안전 및 보건관리 계획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직책자 평가, 종사자 의견청취 이행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렇지만,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이 빈도, 강도법으로 실시되고 있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개선대책 이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 요소인 안전보건 정보 공유 및 근로자들이 의견을 공유 및 참여하는 절차가 미흡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상조치 매뉴얼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 이에, 1~4회차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존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사업장에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성평가 실시방법을 3단계 판단법으로 변경하여 보다 직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담당자를 지정했습니다. 작업중지, 긴급구호조치 등을 포함한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비상상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교육하였습니다.

□ 컨설팅 기간 중 달라진 점

- 무엇보다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설정하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경영철학을 근로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의 빈도, 강도법으로 진행되던 위험성평가 방법은 3단계 판단법으로 변경되어 평가 과정이 더 직관적으로 개선되었으며, 현실적인 이행 가능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담당자를 명확히 지정했습니다.
- 또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가 강화되어,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상조치 매뉴얼을 보완하고 작업중지 및 긴급구호조치 등 필수 내용을 포함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강화되었으며,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매년 1회 이상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해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기 1회 이상 위험성평가 내용을 점검하여 보완 및 수정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나아가,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체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종사자 의견청취와 피드백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험성평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선대책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월 1회 이상 작업 전 안전미팅(TBM)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정보 및 재해사례 공유,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으로 보관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안내하는 등의 소통창구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비상조치 매뉴얼 내에서 사내외 비상연락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실제 비상상황 발생 시 활용하여 재해를 조기에 방지하고, 긴급구호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드립니다.

II 사업장 안전보건 현황 파악

□ 사업장 주요 현황

○ 사업장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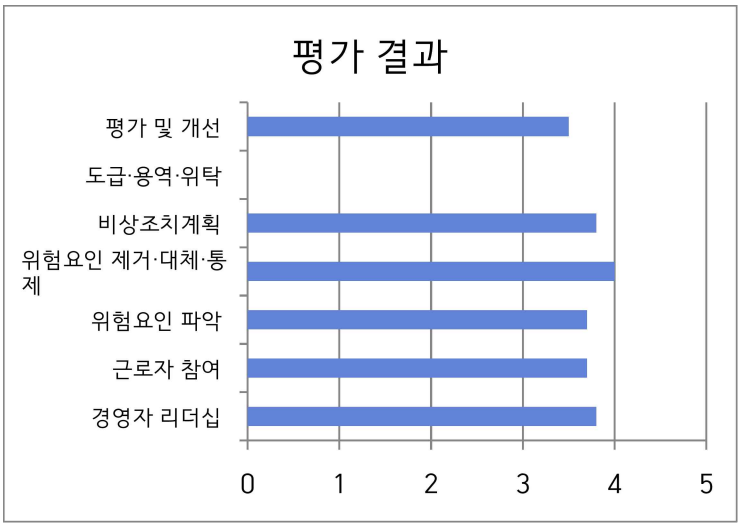
사업장명	세화종합사회복지관	대표(대표이사)	김용길
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5	업종	보건 및 사회복지업
근로자 수	(19)명(외국인: 0명)	사내협력업체	(0)개소
본사등포함시	()명		(0)명
최근 3년 재해 발생 현황	해당사항 없음	최근 3년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해당사항 없음
담당자	제아름 과장	연락처	032-813-2790
안전보건 관리자(담당자) 선임 또는 위탁 여부	해당사항 없음	안전보건관련 부서 여부	해당사항 없음
본사·지사·공장 등 현황	본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5		
주요 생산품	사회복지서비스업		
주요 생산(작업) 공정·절차	조리업무 : 식자재 입고->재료손질->가열 및 조리 -> 포장->뒷정리 시설 및 영선업무 : 민원접수 및 정기점검 -> 문제확인 -> 수리 및 교체-> 점검 및 완료 사회복지사 : 지역주민 대상으로 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 및 특화사업 실시		

○ 작업장 현황

- 본 사업장은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의 공간을 임대하여 지상3층, 지하1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음.
- 건물 내 엘리베이터 1대와 계단이 있으며, 계단에는 미끄럼방지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음.
- 지상 1층에는 조리실, 푸드뱅크, 문서고가 있으며, 2층은 사무실, 강당, 자원봉사자실, 피아노실, 3층은 주민휴게실, 방과후 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건물 내 20여개의 분말 및 투척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있으며, 피난안내도가 각 층마다 부착되어 있음.
- 2층에 자동유리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충돌방지를 위한 안전보건표지가 부착되어 있음.

□ 컨설팅 수준 현황(체크리스트)

구분	점수	의견	
경영자리더십	3.8	• 양호	<아래 그림참고>
근로자참여	3.7	• 양호	
위험요인 파악	3.7	• 양호	
위험요인 통제	4.0	• 양호	
비상조치계획	3.8	• 양호	
도급 등 안전확보	-	• 해당사항 없음	
평가 및 개선	3.5	• 양호	



○ 생산(작업)공정의 주요 유해·위험요인

- 조리 시 뜨거운 냄비, 증기, 기름 등에 의한 화상 위험
- 조리 중 가위, 칼 등 조리도구에 의한 자상 위험
- 바닥 미끄러짐으로 인한 전도사고 위험
-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추락, 낙하위험
- 장시간 근로, 동일한 자세로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VDT증후군 발생 위험
- 고객응대 업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발생 위험

○ 근로 현황

- 전체 근로자 수는 19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고 있지 않음.
- 근로자 중 영양사는 단시간 근로계약으로, 사무보조 근로자 1명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음.
- 나머지 근로자들은 1일 8시간 주간 근무하고 있음.

○ 안전보건경영 현황

안전보건투자	• 근로자에게 법정 건강검진을 실시함. • 전기안전시설, 공기청정기 등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함. • 마스크, 장갑, 가스누출탐지기 등 보호장비를 구입함. • 법정 승강기, 소방검사를 외부 위탁을 맡겨 실시함.
경영자 주요 안전보건활동	•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장에 게시함. • 연1회 안전보건 관리 직책자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함.
기타 컨설팅·진단 등 경험	• 해당 사항 없음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최근 고용부, 공단의 점검·감독 및 지도 현황

최근 3년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현황	해당사항 없음	감독 결과 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최근 3년 공단 지원 현황	해당사항 없음	세부지원항목	해당사항 없음

III 컨설팅 및 개선 내용

□ 회차별 컨설팅 및 경영자 면담 개요

방문일자	회차별 컨설팅 및 경영자 면담 내용
1회차(2024.9.5.)	• 1회차 미팅 시 관장님 부재중으로 경영자 면담 진행하지 못함. 대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와 미팅을 실시하여 사업장 근로자 수, 주요 기계·기구 및 재해발생 현황 등을 파악함. • 매년 사업장에서 시설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으며, 해당 계획서에는 위험성 요인 조사 계획 및 종사자 의견청취 내용,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2회차(2024.9.19.)	• 기존의 마련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사회복지시설업의 특성을 담당 일부 수정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마련하였으며,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목표를 담은 안전보건 목표수립 예시안을 제공함. •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면서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 수준을 3단계로 판단하는 상중하법을 이용하여 시범실시를 진행함.
3회차(2024.10.4.)	• 3회차에 대표자인 관장님 면담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대표자가 관심을 갖고 계속적인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함. •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직접실시를 참관하였으며, 제거 및 대체-> 공학적 대책-> 행정적 대책-> 개인보호구

	지급 순서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설명함. • 유해위험요인 발굴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지도함. • 개선대책 마련 시 복수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예정일,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방안을 정하도록 안내함.
4회차(2024.10.21.)	• 대표자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여, 위험성평가의 개념, 절차, 방법을 설명함. • 사업장에서 직접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여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인지시키고, 개선대책 이행을 독려함. •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포함한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 매뉴얼을 제공하였으며, 사내외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함.

□ 위험성평가 시범실시

○ 위험성평가 시범실시 컨설팅 내용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 '24년 상반기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했으나, 위험성평가 조직, 시기, 방법, 절차 등을 포함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마련되지 않았으며, 위험성평가에 대한 담당자 및 근로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마련하여 위험성평가 담당자 및 조직을 구성함. • 위험성평가 규정 내 평가대상, 실시시기, 추진절차, 위험성판단 기준, 위험성평가 기록 공유 등을 규정하여 위험성평가 절차를 서면화하여 제공함. • 위험성평가의 일련의 과정 및 위험성평가 방법을 상중하법 중심으로 설명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맞는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함.
위험요인 파악·결정	• 2회차 컨설팅 시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 시범실시를 진행하였으며,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서식을 제공하였음. • 사업장 담당자와 공정별 근로자가 참여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안전보건 제안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발굴방법을 안내함. • 사회복지단체 및 사무직 산업재해 사례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도록 함. • 위험성 결정시 ① 상 :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② 중 : 사고 발생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또는 사고 발생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위험, ③ 하 : 3일 미만의 휴업 또는 작업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로구분하여 내부적인 기준을 안내하고,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위험성을 결정하도록 지도함.
감소대책 수립·이행	• 사업장 내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로 위험성수준이 허용가능한 수준을 초과 할 경우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개선대책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개선대책별 추진일정 및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안내함. • 1) 위험요인의 제거, 대체 -> 2) 공학적 대책 -> 3) 관리적 대책 -> 4) 개인보호구별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복수의 대책마련이 효과적임을 설명함. • 기존의 유해위험요인 외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발생 위험을 추가적으로 발굴했으며, 고객응대근로자의 개선대책 마련방안을 제안함.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관리감독자 및 팀장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존 회의체를 활용하여 근로자들이 유해위험요인을 주지하고, 감소대책의 내용과 이행 시기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함. • 또한, 4회차 컨설팅 시 근로자 대상으로 집합 교육을 실시하여 위험성평가의 개념, 방법, 절차 등을 안내하고,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함.

○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현재 안전보건 조치 없음		◆ 유해위험요인: 고객응대업무 수행 시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발생 위험 ◆ 개선대책: ①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안내 포스터 부착 ②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매뉴얼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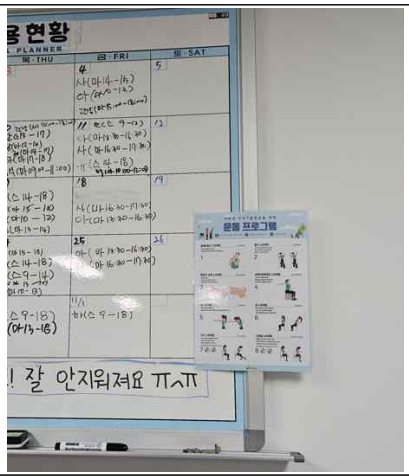
□ 위험성평가 사업장 직접실시

○ 위험성평가 사업장 직접실시 컨설팅 내용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직접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조직을 구체화하고, 사업장에 맞춤화 작업을 실시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규정 체계화 작업을 실시함. • 사회복지업종 및 해당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리원 및 사무직 근로자의 재해사례를 안내하였으며 유해, 위험요인에 발굴할 수 있도록 제안함.
위험요인 파악·결정	• 위험성평가 참관지도의 일환으로 관리감독자와 함께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를 같이 진행함. 이미 개선대책이 이행 중인 경우에는 현재의 안전조치를 유지하고, 유해위험요인으로 발굴되지 않았거나 개선대책이 미흡한 부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를 지도함. • 청취조사에 의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작업장 내 위험요인 발굴이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임. • 이에, TBM 회의시간이나 기존의 회의시간을 활용하여 근로자 청취조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함.
감소대책 수립·이행	•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하면서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도 효과적인 개선대책 마련방법임을 설명함. • 해당 사업장은 기존의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어 상당부분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을 확인하였음. 이에, 현재의 안전조치가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가능하면 복수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함. • 조리실의 경우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주기적으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 화상 등의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스트레칭 실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매뉴얼 작성을 지원함.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련한 지침>제13조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 후 근로자에 대해 ① 작업과 관련한 유해,위험요인 ② 위험성 결정 결과 ③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④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할 사항을 주지하여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4회차 컨설팅 시 근로자 교육을 지원함. • 경영진 면담 시 위험성평가 결과가 공유하여 근로자에게 알리는 교육과정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음. • 관리감독자에게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의 개념, 실시시기, 실시방법, 관련서식 등 구체적인 안내를 실시함.

○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현재 안전보건조치 없음		◆ 유해위험요인: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및 VDT 증후군 발생 위험 ◆ 개선대책: 작업 전후 스트레칭 실시 근로자 교육 및 운동 프로그램 교육자료 게시

□ 경영자 리더십 지도 및 개선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수립

- (문제점) 사업주가 안전보건 경영의지와 철학을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마련하였으나, 사회복지업종 및 규모를 고려한 맞춤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개선방안) 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 의지를 담은 경영방침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근로자들에게 전파하도록 함.

2. 안전보건 조직 및 예산

- (문제점) 사업장 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이 지정되어 있으나 인원이나 담당자의 역할이 구분되어 명시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 근로자 보호구 구입, 건강검진 비용, 정기 법정검사 등 안전보건 관련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예산 수립 및 집행내역이 관리되고 있지 않음.

- (개선방안) 본 사업장은 주로 사무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나,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는 것이 권장됨. 이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공식적으로 작업자 지휘감독, 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선임계 작성을 지도함. 또한, 연단위로 안전보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내역을 관리하도록 서식을 제공함.

1-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게시

안전보건경영 방침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안전보건경영이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임을 표명하고
안전보건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선언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2.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개선하여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
3.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4. 사회복지시설에 적합한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5. 전 임직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024.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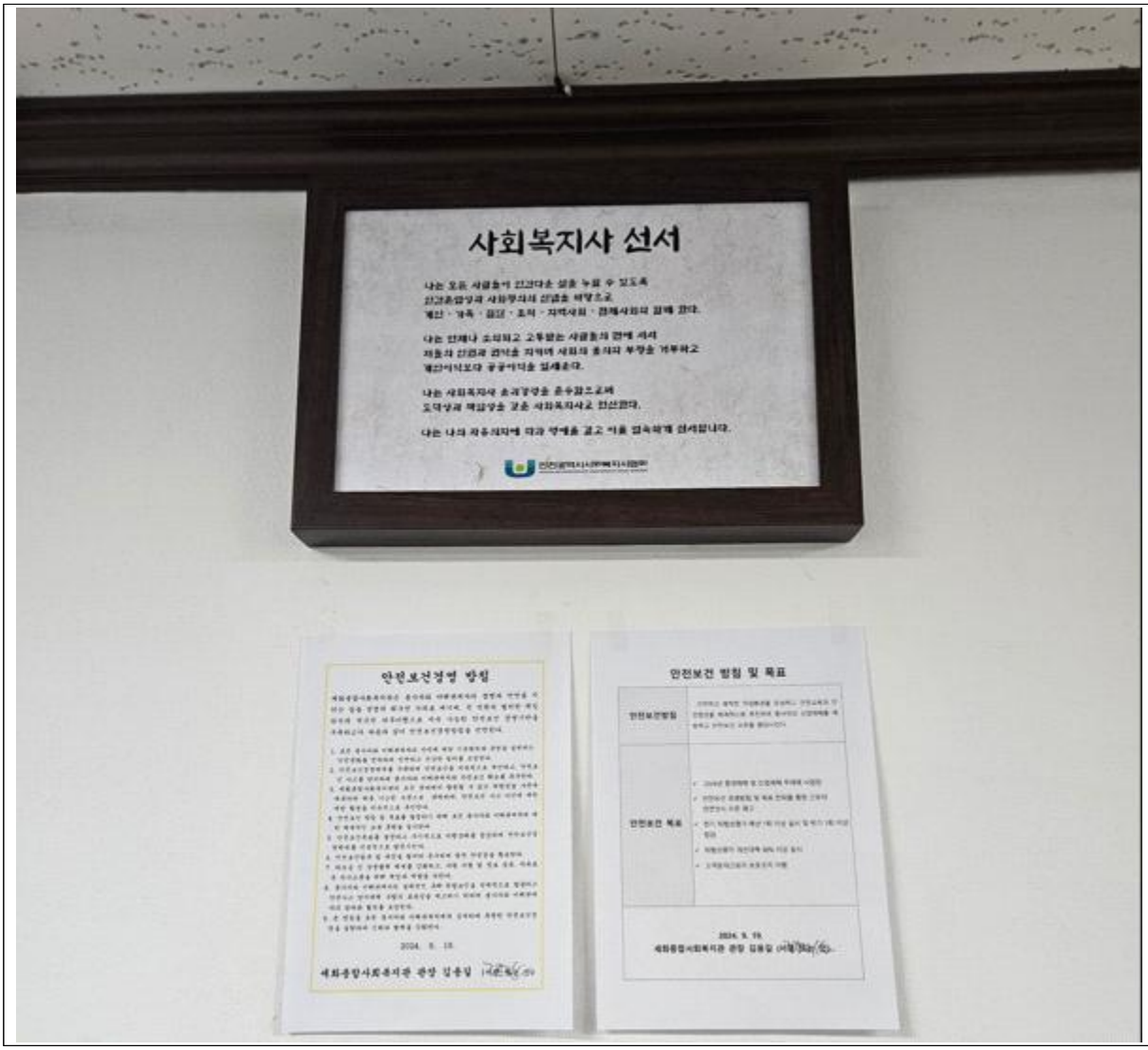
세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용길 (서명 또는 인)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안전보건방침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은 경영활동 전반에 전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안전보건 목표	✓ 2024년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무재해 사업장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전파를 통한 근로자 안전의식 수준 제고 ✓ 정기 위험성평가 매년 1회 이상 실시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90% 이상 실시 ✓ 정기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100% 이행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2025. 9. 19.

세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용길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사 선서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1-2. 안전보건 조직 및 예산수립

관리감독자 선임계

1. 선임자

○ 성 명 :
○ 직 책 :
○ 선임일 :

2. 수행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 따른 업무

귀하를 **<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선임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이사 성명 (직인)

본인은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안전·보건에 관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사실을 확인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안전보건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24		2023
		예산	집행내역	실적
인력 및 시설, 장비 분야	• 시설 및 장비 점검·보수			
	• 안전검사 실시			
	• 신규 기계·기구 설치 및 투자비			
안전분야	•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보건 진단 및 컨설팅			
	• 안전보호구 구입			
보건분야	• 검강검진 실시(특수건강검진 포함)			
	• 근골격계 질환 예방			
	• 휴게 및 위생시설 관리			
교육분야	•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 채용 시, 특별교육)			
	• 직책자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기타	• 안전보건 제안제도 운영비			
예비	• 예비비			
	합계			

□ 근로자 참여 지도 및 개선

1. TBM 실시

- (문제점) 현실적인 시간 제약 및 서비스업 특성상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는 진행된 바 없어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 정보나 사례 공유 등이 미흡함. 또한, TBM 실시 방법이나 내용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회의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음.

- (개선방안) 대부분 사무직 근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안전보건 정보 공유 및 근로자 의견청취 차원에서 주기적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가 권장됨. 또한, 일부 조리, 시설 및 영선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있어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월1회 이상 관리감독자 주재 하에 실시하도록 제안함.

- TBM 설명자료 배포와 함께 어떠한 내용을 회의해야 하는지 시나리오 예시를 제공함. 주기적으로 위험성평가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회의록으로 기록하도록 독려함.

- **1-1. TBM 설명자료 및 서식**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설명

1) TBM이란?

■ Tool Box Meeting의 줄임말

■ 작업 전 작업 현장 근처에서 관리감독자(반장, 팀장 등)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안전작업절차 등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의논하는 활동

⇨ 안전 브리핑,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안전 조회, 위험예지 훈련 등 사업장마다 표현방법이 다를 수 있음

⇨ **TBM 실행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됨**

■ TBM은 작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임

⇨ 작업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전달하고 인지시킬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우려사항이나 현장 안전 개선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

2) TBM 실시 요령

◆ (참고)TBM 실행 시나리오 예시

단계	내용	
1. 사전준비 (TBM 리더)	① 위험성평가 결과 정리 ② TBM 리더(관리감독자) : 자료 작성 및 내용 숙지 (위험성평가 결과, 사고보고서, 안전작업지침 등)	
2. 실행 (작업 전 5~10분 실시) (TBM 리더 중심, 근로자 상호 체크)	(2분)	작업자 건강상태,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3분)	- 위험성평가 내용(위험요인, 안전작업절차) 공유 (카톡, 밴드, App 등 다양한 방법활용) - 추가 위험요인 의견 제시
	(1분)	- 작업자 내용 숙지 여부 확인
3. 환류 조치	① 작업자 제안사항 검토 ② TBM 결과 피드백 ③ 기록·보관	

구분	TBM 리더(관리감독자) 멘트
① 작업장소 이동 (체조 및 스트레칭)	○ 안녕하십니까? ㅇ월 ㅇ일 ㅇ요일 아침 TBM 시작하겠습니다. ○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보겠습니다. (몸풀기 진행)
② 건강상태 확인	○ 체조 중 몸에 이상이 느껴지는 분 있으신가요? ○ 어제 늦게까지 술 드신 분은 없으신가요? ○ 열이 나거나 몸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은 지금 말씀해 주세요.
③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 다음은 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두분씩 짝 맞춰 서서 동료분의 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해주세요
④ 작업내용, 위험요인 공유	○ 다음은 오늘 작업할 내용과 위험요인 및 작업절차에 대해 공유하는 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카톡(밴드)로 공유해드린 자료를 보겠습니다. ○ 오늘 작업 중 가장 위험한 사항은 ~입니다. ○ 중점관리사항과 안전대책은 ~~입미다. ○ 추가로 위험요인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⑤ 작업자 숙지여부 확인	○ 오늘 가장 중요한 위험포인트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다시 한 번 상기해주시고 ㅇㅇ 안전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다.
⑥ 비상시 대피요령	○ 마지막으로 비상시 대피요령을 확인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비상대피 경로는 ㅇㅇ계단이고, 밖으로 대피 후에는 비상집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작업위치에 소화기는 ㅇㅇ기둥, ㅇㅇ계단 옆에 비치하였습니다. 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 교육 실시

- (문제점) 본 사업장의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어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 중 개선대책을 실시해야 함에도, 별도로 위험성평가를 근로자에게 공유한 바 없음.
- (개선방안) 4회차 컨설팅 시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여 위험성평가의 개념, 절차, 위험성평가 방법과 함께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결과와 개선대책을 전파함.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근로자들과 의견을 교류하였으며, 유해,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함.

2. 위험성평가 교육지원 보고서

체계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교육 지원 보고서

■ 교육 개요

교육 회차 및 실시일	4회차 2024년 10월 21일	교육 유형	기술지원 중 집합교육 ☑	순회점검 시 면담교육 ☐	담당자 강평 ☐

■ 교육(강평) 내용

- 위험성평가 전단계에서 파악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 교육
- 위험성평가 결과 파악된 위험요인, 위험성 및 감소대책 등 교육

순번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감소대책	개선예정일	담당자
1	(조리실) 조리 중 뜨거운 냄비, 증기, 기름 등에 의한 화상발생 위험	중	조리실 작업자에게 화상방지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상시	제아름 관리감독자
2	(시설,영선) 타카, 드릴 등 수공구 작업 시 손목, 팔의 부상위험	중	안전 장갑 등 보호구 지급	2024.10.31.	
3	(사무직) 고객응대근로자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상 스트레스 발생 위험	중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포스터 부착	2024.10.31.	

■ 교육(강평) 실시 수행요원

소 속	성 명	교육 장소
노무법인 우광	노혜란	세화종합사회복지관 회의실

■ 교육(강평) 사진 등

■ 교육(강평) 이수자 명단 : 명

NO	성명	직급	NO	성명	직급
1	강영강	관장	8	박 윤호	대리
2	박혜윤	부장	9	강 성석	시설기사
3	제아름	과장	10	진수민	복지사
4	강 동한	대리	11	허하복	복지사
5	주영강	대리	12	최사랑	복지사
6	강은경	대리	13	양다희	대리
7	유경민	복지사	14	이진만	대리
			15.	장동해	팀장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위험성평가) 지도 및 개선

1.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마련

- (문제점) 본 사업장은 매년 빈도, 강도법으로 위험성평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위험성평가 주체, 실시시기, 위험성 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개선방안) 위험성평가 기준, 절차, 주체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화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수준을 평가한 후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지도함. 나아가, 사업장 전체 위험성평가 조직을 구성하여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3단계 판단법 위험성 결정방법을 변경하여 편의성을 제고함.

1-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사업장 규정번호
00-00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2024. 9.

사업장명 :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승 인	김용길 과장
기 안	제아름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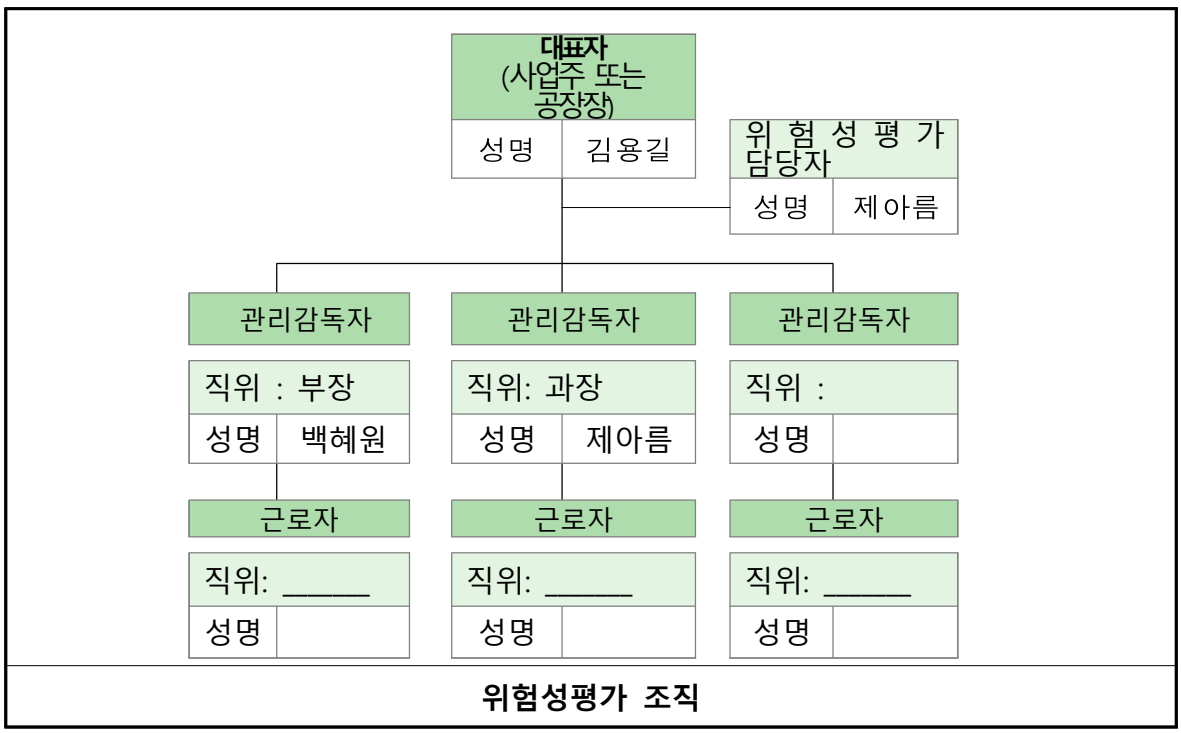
제 정 : 2024.9.	개 정 : (수정한 날짜)

제1조(목적)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및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적용한다.

제2조(적용)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 조직의 구성은〈표 1〉과 같이 한다.

〈표 1〉위험성평가 조직



위험성평가 조직

제4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표 2〉와 같이 한다.

<표 2>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 ○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및 의지표명 - 안전보건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아차사고 사례 등 유해·위험요인 발굴 지원 ○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작업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담당자와 겸직가능)	**《위험성평가 실시》** ○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숙지
근로자(작업자) (위험성평가담당자와 겸직가능)	**《위험성평가 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의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한 장소 인지 ○ 아차사고 사례의 적극적 제보
위험성평가 담당자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와 겸직가능)	**《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인력의 사정을 감안하여 1인 2역 등의 업무분담을 할 수 있다.

제5조(평가대상)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①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

제6조(실시시기) 우리 회사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 사업장의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2024년 9월**까지 실시한다.

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실시하고, 이후 매 1년마다 실시한다. **(정기 실시일 : 매년 9월)**

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및 그간의 수시평가 결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나. 정기평가 시에는 첫째, 빠진 유해·위험요인이 없는지 살펴보고, 둘째,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셋째, 기존 위험성 감소대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시

제7조(실시원칙) 위험성평가 실시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게시 등을 통해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내용에 포함한다.

⑥ 필요한 시 전담직원들에게 위험성평가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추진절차) 위험성평가의 추진 절차는 아래의 내용에 따른다.

① 1단계 :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들을 정의한다.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다.
- 사업주, 위험성평가 담당자, 근로자가 모두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을 설정한다.

②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한다.

③ 3단계 : 위험성 결정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현재의 조치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가 모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 확인 결과, 허용할 수 있는 위험성 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 인지를 결정한다.
- 위험성 수준 결정 방법의 상세한 내용은 제9조의 위험성 결정방법에 따른다.

④ 4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한다.

※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⑤ 5단계 : 기록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한다.

제9조(위험성 결정방법) "상","중","하"의 3단계로 구분하여 파악한 각각의 유해·위험요인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경험 등을 들어 판단하고, 기록 양식에 표시한다.

위험성수준		판단 기준	허용 가능 여부
상	높음	•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허용 불가능
중	보통	• 사고 발생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또는 사고 발생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위험	
하	낮음	• 3일 미만의 휴업 또는 작업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	허용가능

※ 위 예시는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이며, 그 외 위험성평가 방법론에 따른 위험성 결정 방법은 (첨부1) 확인

제10조(근로자에 대한 공유) 우리 회사의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고, 잘 볼 수 있는 곳에, 잘 볼 수 있는 방법(가독성 높은 큰 글씨, 전광판 등)으로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② 우리 회사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교육 대상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내용 포함

③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내용 포함

제11조(근로자의 참여 방법) 우리 회사는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 1명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제12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우리 회사의 유해·위험요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의견 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참여자는 위험성 결정 시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강도)을 고려하여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한다.

제12조(점검 및 개선활동) ① 위험성평가의 이행에 대한 점검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및 이행 책임자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이행 점검 결과, 미이행 사항이나 추가적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내용은 차기(다음번) 위험성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출력하여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는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회사 안전보건 기록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

1-2. 위험성평가표(대표공정)

위험성평가서 (위험성수준 3단계법)				평가대상	조리실		
				평가자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상, 중, 하)	현재 안전조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관련근거
• 식재료 입출고 및 검수 시 중량물 이동작업에 의한 근골격계질환(허리, 무릎 등) 발생 위험	□ □ ☑ 상 중 하	✓	✓ 작업 전,후 올바른 스트레칭 방법 안내 및 작업자 교육 ✓ 올바른 중량물 취급방법 안내	'24.11.15.		관리감독자	
• 조리 중 뜨거운 냄비, 증기, 기름 등에 의한 화상 발생 위험	□ ☑ □ 상 중 하	✓ 작업공간 내 구급함 비치 ✓ 화상주의 안전보건 표지 부착	✓ 작업자에게 화상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24.11.15.		관리감독자	
• 가스불 취급 시 화재 및 폭발 발생 위험	□ ☑ □ 상 중 하	✓ 조리실 내 소화기 비치	✓ 작업자에게 가스레인지 취급 시 주의사항 및 올바른 소화기 사용방법 교육	'24.11.15.		관리감독자	
• 조리 중 가위, 칼 등 조리도구에 의한 자상발생 위험	□ ☑ □ 상 중 하	✓	✓ 조리 시 올바른 칼 사용법, 주의사항 등 근로자 교육	'24.11.15.		관리감독자	
• 조리실 바닥 물기로 인한 미끄러짐, 전도사고 발생 위험	□ ☑ □ 상 중 하	✓ 미끄럼방지 장화 지급	✓ 현재 안전조치 유지	'24.11.15.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서 [위험성수준 3단계법]	평가대상	시설점검 및 영선업무
	평가자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상, 중, 하)	현재 안전조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관련근거
• 이동식 사다리 작업으로 인한 추락, 낙하위험	□ ☑ □ 상 중 하	✓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점검 ✓ 사다리 평탄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서 설치, 최대길이 3.5미터 이하 A형 사다리 작업하도록 지시	'24.11.15.		관리감독자	
• 전기설비 점검 시 누전 또는 전선피복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감전 위험	☑ □ □ 상 중 하	✓	✓ 절연장갑,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점검 ✓ 전원 플러그가 손상되거나 충전부 노출된 경우 교체하도록 정기 점검 및 작업자 교육	'24.11.15.		관리감독자	
• 타카, 드릴 등 수공구 작업 시 손목, 팔의 부상위험	□ ☑ □ 상 중 하	✓	✓ 안전장갑 등 보호구 지급으로 작업자 손 부상 예방 ✓ 타카 및 드릴의 올바른 사용법, 유지보수 방법 등에 대한 정기 근로자 교육	'24.11.15.		관리감독자	
• 반복,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 □ ☑ 상 중 하	✓ 정기적 휴식시간 제공(EX. 1시간 작업 시 10분 휴식)	✓ 작업 전,후 올바른 스트레칭 방법 안내 및 교육	'24.11.15.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서 [위험성수준 3단계법]	평가대상	사무직
	평가자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상, 중, 하)	현재 안전조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관련근거
•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및 VDT 증후군 발생 위험	☐ ☐ ☑ 상 중 하	✓ 정기적인 휴게시간 제공 및 별도의 휴게시설 제공	✓ VDT 증후군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자세 및 스트레칭 교육 실시	'24.11.15.		관리감독자	
• 사무실 바닥 전선정리 미흡 또는 장애물 등으로 인한 전도사고 발생 위험	☐ ☐ ☑ 상 중 하	✓ 전선정리 및 멀티탭 커버 설치	✓ 사무실 이동통로에 장애물 제거, 정리정돈 실시	'24.11.15.		관리감독자	
• 사무실 문서세단기 사용 시 부주의로 인한 손가락, 머리카락 등 끼임 발생 위험	☐ ☑ ☐ 상 중 하	✓ 문서세단기에 안전보건 표지 부착 ✓ 사무실 내 구급상자 비치	✓ 현재 안전조치 유지	'24.11.15.		관리감독자	
• 민원/대민업무 등 고객응대 업무 수행 시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위험	☐ ☑ ☐ 상 중 하	✓ 직원고충처리위원회 및 인권위원회 운영 ✓ 업무용 휴대폰 마련하여 직원 개인 연락처 노출금지	✓ 고객응대근로자 매뉴얼 작성 및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포스터 부착 ✓ 전화연결 시 근로자 보호 연결음 설치	'24.11.15.		관리감독자	

1-3.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이행보고서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이행보고서(1)	결재	작 성	검 토	승 인

대상공정	사무직 근로자	세부작업내용	고객응대, 상담업무
개선일시	2024.10.21.	개선담당자	제아름 관리감독자

위험성 비교

개선 전 위험성				개선 후 위험성		
현재 안전보건조치 없음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허용가능 여부**		**개선대책**	**위험성 수준**	**허용가능 여부**
고객응대업무 수행 시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발생 위험	중	X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안내 포스터 부착하여 근로자 보호	하	O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이행보고서(2)	결재	작 성	검 토	승 인

대상공정	사무직 근로자	세부작업내용	고객응대, 상담업무
개선일시	2024.10.21.	개선담당자	제아름 관리감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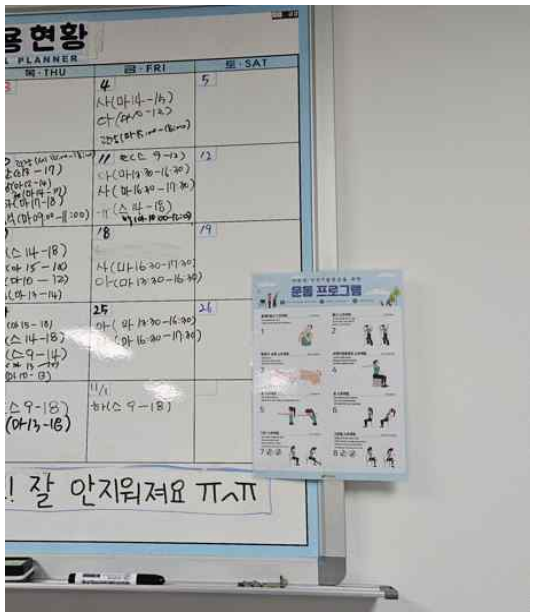
위험성 비교

개선 전 위험성				개선 후 위험성			
현재 안전보건조치 없음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전화연결음 내용 안내 문구 1 산업안전보건법에 상담사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폭언, 성희롱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폭언, 성희롱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악성 댓글보다 폭언이 더 아픕니다. 폭언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에 상담사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의 시작입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에 상담사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은 배려가 우리에겐 큰 힘이 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에 상담사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한 점음에 동참해 주세요. 7 산업안전보건법에 상담사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말이나 욕설, 폭언을 삼가해 주세요. 8 산업안전보건법에 상담사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보다 폭언이 더 아픕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의 시작입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은 배려가 우리에겐 큰 힘이 됩니다. 11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한 점음에 동참해 주세요. 12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말이나 욕설, 폭언을 삼가해 주세요. 13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보다 폭언이 더 아픕니다. 14 고객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에 상담사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허용가능 여부**		**개선대책**	**위험성 수준**	**허용가능 여부**	
고객응대업무 수행 시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발생 위험	중	X		전화연결 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전화연결음 설정하여 폭언 등 예방	하	O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이행보고서(3)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대상공정	사무직 근로자	세부작업내용	장시간 근로 및 고정자세로 컴퓨터 작업
개선일시	2024.10.21.	개선담당자	제아름 관리감독자

위험성 비교

개선 전 위험성				개선 후 위험성		
현재 안전보건조치 없음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허용가능 여부**		**개선대책**	**위험성 수준**	**허용가능 여부**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및 VDT 증후군 발생 위험	중	X		작업 전후 스트레칭 실시 근로자 교육 및 운동 프로그램 교육자료 게시	하	O

2. 아차사고 또는 동종업종 재해사례 수집 및 교육

- (문제점) 본 사업장은 최근 3년간 무재해 사업장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잘 이행하고 있음. 또한,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서비스업 특성상 산업재해 발생 위험은 높지 않음. 그럼에도 동종업종 재해사례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을 강화할 필요 있음.
- (개선방안) 유해, 위험요인 파악방법 및 재해예방 중심으로 아차사고 사례 수집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아차사고를 발굴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하도록 제안함. 또한, 사회복지업종의 유해위험요인 중 하나인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로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요 위험요인별 재해예방대책을 교육함.

2-1. 아차사고 설명자료 및 서식

1) 아차사고 관리 중요성 및 사례

■ 아차사고 관리 중요성

⇨ 아차사고 = 산업재해의 전조증상

⇨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

⇨ 아차사고가 확인된 경우 위험성평가를 통해 재해를 미리 방지해야 함

■ 아차사고 사례

① A형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사고

② 컨베이어에 옷자락이 끼이는 사고

③ 높은 곳의 적재물이 떨어질 뻔한 사고 등

2) 아차사고 발굴요령(※ 위험성평가 절차와 연계)

1단계) 아차사고 정보 파악

2단계) 문제점 분석

3단계) 기존 대책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대책을 수립

4단계) 결정된 대책의 실시절차 수립

5단계) 대책 실시

6단계) 실시결과 확인 및 평가 (대책이 계획대로 행해졌는지 및 적절했는지)

3) 아차사고 발굴 활동 사례

< 아차사고 사례 공유방 >
- 전산망이나 밴드를 개설하여 근로자들이 작업 중 경험한 아차사고 사례를 공유하여 유사사고 발생을 방지
- 아차사고 사례는 차기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에 추가



< 아차사고 발굴카드 제도 >
- 아차사고 경험을 작성할 수 있는 카드를 작업장에 비치하여 작업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아차사고를 작성하여 신고함에 제출
- 안전담당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자료로 재구성
- 아차사고 사례는 차기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에 추가



5 주요 위험요인 별 재해예방대책

넘어짐·미끄러짐

- 환자 부축 시 환자와 의사소통을 통해 의도하고자 하는 다음 행동을 미리 알려주며 함께 움직이도록 함
- 목욕탕 바닥 등 미끄러운 부분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거나 테이프, 스티커 등 미끄러지지 않는 보조 용품을 사용하여 미끄럼을 예방
- 출입문 등 작업공간별 출입구의 턱, 돌출 부위는 제거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여 보행 중 걸려 넘어짐 예방과 휠체어 등의 이용을 원활하도록 함
- 계단 통행 시에는 난간을 붙잡고 이동하고 가급적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 이용

부딪힘·떨어짐

- 높은 장소에 물건을 수납하거나 꺼낼 때는 안정된 작업발판을 사용
- 사용이 빈번한 용품은 수납장의 아래쪽에 보관
- 침대 모서리 등 부딪히기 쉬운 장소에는 우레탄 폼 재질의 쿠션 부착

근골격계 질환

- 평상시 및 작업 전·중·후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근골격계의 유연성 및 근력 증가
- 환자 부축 시 몸에 밀착 시킨 후 하체를 이용하여 환자를 들어올림
- 가급적 쿠션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여 피로도를 경감시키고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실시
- 물품 보관 시 무게를 분산하여 적재하고 무거운 물건은 선반 아래쪽에 보관

감정노동 관리

-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화를 내는 고객에게 1차 대응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동료 근로자나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
- 고객과의 민원이나 다툼 경험을 동료와 공유하고 서로 지지하기
-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명상이나 근육이완법 실천
- 고객과의 다툼을 경험한 근로자는 후유증상을 겪지 않도록 관리자와 면담 및 필요 시 전문가 상담

□ 비상시 조치 지도 및 개선

1. 비상조치계획 수립

- (문제점) 기존의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였으나, 작업중지, 근로자대피, 중대산업재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재해발생별 시나리오가 마련되지 않았음. 또한, 사내 및 사외 유관기관에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근로자에게 전파, 공유되지 않음.
- (개선방안) 작업중지, 근로자대피, 긴급구호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대산업재해 매뉴얼을 작성하고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지도함. 사내(사업주, 관리감독자) 및 사외 유관기관(관할 소방서, 경찰서, 상급병원, 보건소 등)의 연락처를 포함한 사내외 비상연락체계를 구축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전파, 공유될 수 있도록 지도함.

1-1. 중대산업재해 조치 매뉴얼

중대산업재해 조치 매뉴얼

1. 필요성

❍ '22. 1. 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확보 필요

❍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비 매뉴얼 마련 필요

2. 법적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3. 중대산업재해 등 사고 발생 대비 단계별 조치

1) 상황전파 및 작업중지

❍ 재해 발생 최초 목격자는 비상경보(전화, 육성, 발신기 작동 등)로 주변 사람들에게 재해 상황전파 및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신고*

* 신고내용: 발생지역(건물, 설비명 등), 사고 종류와 상태, 신고자 소속, 성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즉시 해당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중지는 근로자 등 종사자(도급·용역·위탁 소속 근로자 포함), 사업자 및관리감독자가 주체가 될 수 있음

2) 초기대응 및 비상조치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재해 대응 총괄 및 지휘를 맡고, 비상사태별 계획에 따라 임무가 부여된 근로자는 자신의 임무 수행

❍ 관리감독자는 유관기관에 재해 발생 보고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 시 인원 동원 협조 요청

*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고용노동관서에 보고

❍ 119 등 긴급 상황 연락과 함께 재해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본적인 응급조치 실시

* 다만,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 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음

3) 긴급대피

❍ 화재 확산 등 초기대응 불가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종사자를 사업장에서 정한 비상대피장소로 긴급 대피 조치

* 사업장에서는 사전에 비상대피 훈련 등을 통해서 사업장 내 비상시 대피 장소를 종사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4) 신고(보고) 및 현장보존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유선 보고 후 지체없이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서면보고[붙임1,2]

제출서류명	제출기한	근거	서류
산업재해조사표	발생일로부터 1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붙임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붙임2

❍ 작업중지 조치된 현장은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사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존

5) 사고원인 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 관리감독자는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예방대책과 복구계획이 포함된 재해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

-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가능한 내용으로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작성
- 예방대책 및 복구계획 마련 시 종사자의 의견 적극 반영,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종사자에게 전달 및 공유

* 종사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 위험사항 개선 및 후속조치

○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위험요인 개선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간 보존

7) 종결

○ 작업중지 및 현장보존 조치는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완료된 때에 종결되며, 종사자 복귀 등 현장의 제반 기능을 정상체제로 전환

○ 재해상황 및 작업중지 종결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 원인 및 처리결과를 종사자에게 교육 또는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안내

참고 중대재해 시나리오

1) 추락사고(떨어짐, 넘어짐 등)

구분	조치 내용	R&R
사고 발생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비상상황 전파 및 지원 요청(119 및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최초 발견자
사고자 응급조치	○ 재해자의 의식, 호흡 등 확인 후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구호장비 등 이용하여 부상자 이동 ○ 부상정도에 따른 현장 응급조치 - (골절) 부위를 부목으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 위험하지 않은 한 완전히 고정하기 전 이동 금지 - (외상) 소독 및 필요한 연고를 상처에 바르고 거즈 또는 붕대로 상처부위 보호 - (목뼈 손상)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환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머리를 고정, 코와 배꼽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	
3. 사고현장 처리 및 보존	○ 사고 현장은 조사 종결 시까지 그대로 보존 ○ 2차 재해 등의 우려 시 재해발생 설비·기계 등의 가동 및 작업을 중지하고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 후 위험원 방호 조치 ○ 2차 재해 발생치 않도록 관계자외 출입 통제	관리감독자
4. 피해확인	○ 재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 ○ 기타 시설, 다른 동료 등 피해 여부를 확인	관리감독자
5. 상황보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사고경과 및 조치내용 보고 ○ 관련기관에 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 재발방지 대책수립	○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 ○ 개선대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2) 끼임, 베임, 절단사고

구분	조치 내용	R&R
사고 발생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비상상황 전파 및 지원 요청(119 및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최초 발견자
사고자 응급조치	○ 재해자의 의식, 호흡, 자세, 맥박, 동공을 확인 ○ 구호장비 등 이용하여 부상자 이동 ○ 부상정도에 따른 현장 응급조치 **[주요증상]** - 손상 부위에 출혈량 많고 출혈 속도 빠름 - 출혈량이 많은 경우 호흡 불규칙, 얼굴 창백하며 몸이 차가워지는 쇼크 현상 발생 **[응급처치요령]** - 안전한 장소로 이송, 출혈방지(지혈대, 압박붕대 등) - 출혈부분을 심장보다 높게하고 안정을 취하도록 눕힘 - 병원의 수술 대비해서 음료 섭취 절대 금지 - 쇼크방지를 위해 보온하여 즉시 병원으로 이송 - 절단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씻어 깨끗한 거즈로 감싸고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다시 큰 타올로 감싼 후 밀봉하여 얼음과 물 1:1의 비율로 섞은 용기에 담아 냉장 상태를 유지 - 환자와 함께 접합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신속히 이동	
3. 사고현장 처리 및 보존	○ 사고 현장은 조사 종결 시까지 그대로 보존 ○ 2차 재해 등의 우려 시 재해발생 설비·기계 등의 가동 및 작업을 중지하고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 후 위험원 방호 조치 ○ 2차 재해 발생치 않도록 관계자외 출입 통제	관리감독자
4. 피해확인	○ 재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 ○ 기타 시설, 다른 동료 등 피해 여부를 확인	관리감독자
5. 상황보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사고경과 및 조치내용 보고 ○ 관련기관에 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 재발방지 대책수립	○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 ○ 개선대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3) 충격쇼크(일사병, 열사병) 사고

구분	조치 내용	R&R
사고 발생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비상상황 전파 및 지원 요청(119 및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최초 발견자
사고자 응급조치	○ 재해자의 의식, 호흡, 자세, 맥박, 동공을 확인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 이동 ○ 부상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 **[주요증상]** -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메스꺼움, 구토나 헛구역질 증상 발현 - 맥박 및 호흡 불규칙 또는 의식을 잃음 **[응급처치요령]** - (머리부상 없는 경우) 하체를 20~30cm 높임 - (가슴부상으로 호흡 힘든 경우) 머리와 어깨를 높임 - (의식 있는 경우) 따뜻한 물, 차 등을 조금씩 음용 - (무의식, 희미하거나 수술을 요하는 경우) 원칙적 음용금지, 환자가 원할 때는 거즈에 물을 적셔 입 언저리에 대어줌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3. 사고현장 처리 및 보존	○ 사고 현장은 조사 종결 시까지 그대로 보존 ○ 2차 재해 등의 우려 시 재해발생 설비·기계 등의 가동 및 작업을 중지하고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 후 위험원 방호 조치 ○ 2차 재해 발생치 않도록 관계자외 출입 통제	관리감독자
4. 피해확인	○ 재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 ○ 기타 시설, 다른 동료 등 피해 여부를 확인	관리감독자
5. 상황보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사고경과 및 조치내용 보고 ○ 관련기관에 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 재발방지 대책수립	○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 ○ 개선대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4) 이상온도 접촉(화상) 사고

구분	조치 내용	R&R
사고 발생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비상상황 전파 및 지원 요청(119 및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최초 발견자
사고자 응급조치	○ 재해자의 의식, 호흡, 자세, 맥박, 동공을 확인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를 이동 ○ 부상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 **[주요증상]** - (1도 화상) 열에 의하여 피부가 붉어진 정도 - (2도 화상)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정도 - (3도 화상) 화상정도 심하여 신경 및 조직의 파괴 동반 **[응급처치요령]** - 화상 부위의 열기와 통증이 가라앉을 정도로 찬물에 담금 - 의복을 벗기지 말고, 화상 입은 곳을 처치하고 담요 등으로 환자를 덮고 안정시켜 속히 병원으로 이송 - 상처에 붙은 의복은 병원에서 제거 - 상처에 탈지면을 직접 대거나, 쇠붙이 등 상처에 붙어 있는 물건을 떼려고 하거나, 물집을 터트려서도 안됨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3. 사고현장 처리 및 보존	○ 사고 현장은 조사 종결 시까지 그대로 보존 ○ 2차 재해 등의 우려 시 재해발생 설비·기계 등의 가동 및 작업을 중지하고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 후 위험원 방호 조치 ○ 2차 재해 발생치 않도록 관계자외 출입 통제	관리감독자
4. 피해확인	○ 재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 ○ 기타 시설, 다른 동료 등 피해 여부를 확인	관리감독자
5. 상황보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사고경과 및 조치내용 보고 ○ 관련기관에 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 재발방지 대책수립	○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 ○ 개선대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5) 전기 감전사고

구분	조치 내용	R&R
사고 발생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비상상황 전파 및 지원 요청(119 및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최초 발견자
사고자 응급조치	○ 즉시 전기 차단,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송 후 처치 **[주요증상]** - 전기쇼크에 의한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전신마비 증상 발현 - 전기가 들고 나는 곳에 상처가 생기며 특히 나오는 출구의 상처는 깊고 심함 **[응급처치요령]** - 즉시 전기 차단,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처치 - 호흡정지 시 인공호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시 - 119구급대 도착할 때까지 인공호흡 실시 후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3. 사고현장	○ 사고 현장은 조사 종결 시까지 그대로 보존	관리감독자

처리 및 보존	○ 2차 재해 등의 우려 시 재해발생 설비·기계 등의 가동 및 작업을 중지하고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 후 위험원 방호 조치 ○ 2차 재해 발생치 않도록 관계자외 출입 통제	
4. 피해확인	○ 재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 ○ 기타 시설, 다른 동료 등 피해 여부를 확인	관리감독자
5. 상황보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사고경과 및 조치내용 보고 ○ 관련기관에 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 재발방지 대책수립	○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 ○ 개선대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6) 가스 누출 및 중독 사고

구분	조치 내용	R&R
사고 발생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가스밸브 차단, 사고자의 상태 확인, 응급조치 후 119 및 관리감독자 등에게 상황 보고	최초 발견자
사고자 응급조치	○ 재해자의 의식, 호흡, 동공 등 확인 후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를 이동시킨다. ○ 2차 재해(폭발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종사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 ○ 부상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한다. **[주요증상]** - 위통, 구토 경력, 현기증 및 의식불명 **[응급처치요령]**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송 및 의복 이완 - (의식이 없는 환자)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즉시 고압산소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3. 사고현장 처리 및 보존	○ 사고 현장은 조사 종결 시까지 그대로 보존 ○ 2차 재해 등의 우려 시 재해발생 설비·기계 등의 가동 및 작업을 중지하고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관리감독자

	확보 후 위험원 방호 조치 ○ 2차 재해 발생치 않도록 관계자외 출입 통제	
4. 피해확인	○ 재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 ○ 기타 시설, 다른 동료 등 피해 여부를 확인	관리감독자
5. 상황보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사고경과 및 조치내용 보고 ○ 관련기관에 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 재발방지 대책수립	○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 ○ 개선대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7) 화재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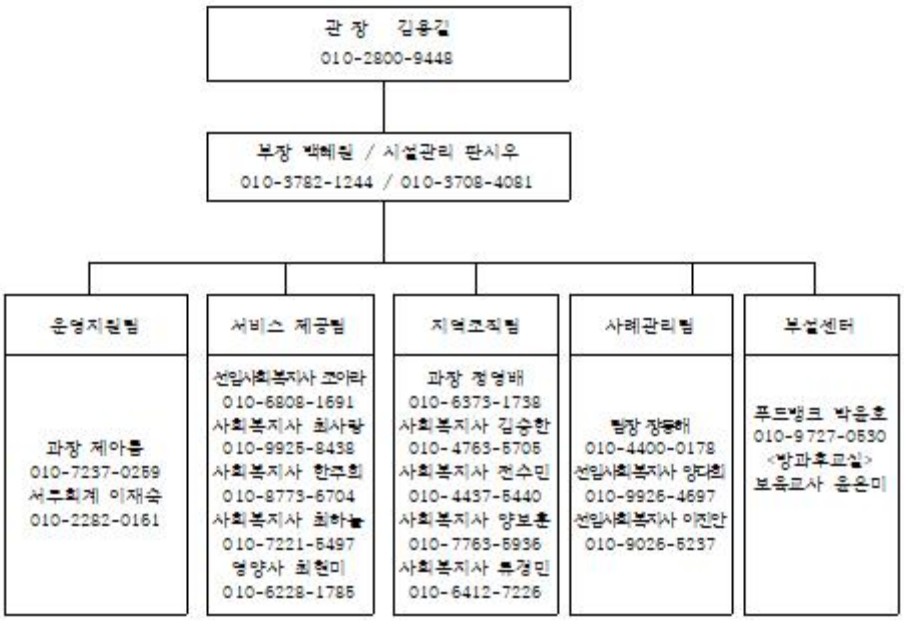
구분	조치 내용	R&R
화재발생, 상황전파	○ 최초 발견자는 "불이야"외치며 주변 동료에게 화재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소화기, 물, 소화전을 이용한 신속 진화 (화재확산 등 초기 대응 불가 시 긴급 대피)	최초 발견자
초기진화 및 구조활동	○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내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 확산 통로 차단하고 가연성 물질을 제거 ○ 전기화재 경우 전기 차단, 가스화재 경우 가스밸브 차단 ○ 주위에 인화성·발화성·폭발성 물질 등을 제거 **[화재별 소화기 사용방법]** - 일반(A급), 유류(B급), 전기(C급), 주방·식용유(K급) -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호스를 불이 난 쪽으로 향한 후 - 바람을 등지고 손잡이를 힘껏 누르고 빗자루로 쓸 듯이 소화 ※ 급식실 유류(식용유) 화재 시 조리기구 뚜껑이 닫힌 경우 긴 치공구를 이용하여 덮개를 열고 소화 ○ 초기진화가 어려운 경우 소방서 및 경찰서로 신고하고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 및 긴급 대피 ○ 건물 내부 화재 시 나가려는 문이 뜨겁거나 연기가 새어 나올 때 문을 열면 안되며 ○ 실내에 연기가 찼을 때에는 낮은 자세로 엎드리고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음 ○ 두꺼운 담요나 이불, 옷 등을 물에 적셔 피부를 감싸고 ○ 불길의 반대 방향에 창문이 있으면 수건, 옷 등으로 신호하여 구조 요청 ○ 대피 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거나 창문 등으로 뛰어내리지 말고 신속히 비상구로 질서 있게 대피 ○ 안전한 장소에서 응급조치 실시 **[유독가스 흡입 시 응급조치]** - 유독가스 및 연기 흡입 시 통풍이 잘되는 안전한 장소로 이송하여 보온 유지 및 필요시 인공호흡 시행 - 의식이 없어 호흡에 장애가 있는 경우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조치 시행 - 심하게 오염되었을 경우 인공호흡을 하면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 전문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조치 **[화상사고 시 응급조치]** - 화상 부위의 열기와 통증이 가라앉을 정도로 찬물에 담금 - 의복을 벗기지 말고, 화상 입은 곳을 처치하고 담요 등으로 환자를 덮고 안정시켜 속히 병원으로 이송 - 상처에 붙은 의복은 병원에서 제거 - 상처에 탈지면을 직접 대거나, 쇠붙이 등 상처에 붙어 있는 물건을 떼려고 하거나 물집을 터트리면 안됨	
복구활동	○ 인화물, 비품, 장비반출 및 소화작업 후 잔여물 제거	관리감독자
재발방지 대책수립	○ 인명 및 환경피해 현황 파악 및 사고 대책반 해체 ○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개선대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붙임]

사내·외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2024년 세화종합사회복지관 비상연락망



유관 기관 비상 연락 전화번호

연수경찰서	821-3331	주공1단지관리사무소	811-0437
연수파출소	813-0975	인천공단소방서	723-5519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749-7632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435-1525
연수3동사무소	817-0273	동춘소방파출소	813-2119
질병관리본부	1339	나사렛국제병원	899-9999
연수구보건소	749-8011	인천적십자병원	899-4000

□ 도급·용역근로자 지도 및 개선

- 해당 사업장은 현재 제3자에게 사내하도급 등 도급, 용역, 위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도급, 용역, 위탁을 대비하여 도급인이 요구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항목 및 기준에 대해 인지할 필요 있음. 이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목적 및 평가항목, 기준을 제시함.

1-1. 적격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

적격수급인 선정 평가표

업체명 :		평가일시: 평 가 자: (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기준**			**득점**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소계**			
일반원칙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적정 여부 및 도급인과 부합 여부	5	5	3	0	
계획수립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10	10	5	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및 조직구성	5	5	3	0	
B. 실행수준		**40**	**소계**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10	5	0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착용 확인 포함)	5	5	3	0	
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확인(특별교육 포함)	5	5	3	0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10	5	0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10	5	0	
C. 운영관리		**20**	**소계**			
연락체계	도급인과 수급인간 신호체계, 비상연락체계	5	5	3	0	
위험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3	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5	5	3	0	

관리비용	안전보건 예산 편성과 집행(개인보호구, 시설·설비·장비 안전조치 등)	5	5	3	0	
D. 재해발생 수준		**20**	**소계**			
산업재해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무재해	재해	중대재해	
			20	10	0	
총 점 (100점 만점)						
총 평	□ 적격 □ 부적격(계약불가) : 총점 60점 미만이거나 '미흡' 1개 이상					

적격수급인 선정 평가기준

1) 안전보건 수준 등급분류

-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입찰 및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수급업체 스스로 안전보건활동을 강화토록 관리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차기 도급계약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보건관리 계획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

•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과 문제점 도출이 가능하며, 평가결과를 수급업체 지원방안 수립에 활용

〈예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 선정(S사)〉

◇ 수급업체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수급업체는 탈락

- 평가항목은 안전보건경영체계/ 이행성 평가 및 실적평가로 구성(7개 분야, 23개 항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위험성평가 인정 시 가점 부여

● **원·하도급간 상생체계 구축**

- 도급인의 지원 활동은 능동적이고 명확히 하여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 배양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를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함으로서 수급업체에서 자발적, 점진적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유도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이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도급업체에서 수급업체 지원 필요 사항을 작업 전에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반영

□ 평가·확인 관리 지도 및 개선

1. 관리감독자 평가 및 반기점검

•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책임자 성과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 등 5개 구축요소에 대해 반기별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본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표를 마련하였으며, 연 2회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음. 다만, 반기1회 점검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체계가 미흡함.

• (개선방안) 기존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표를 구체화한 관리감독자 평가표 서식을 제공하여 반기 1회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함. 본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반기점검표 서식을 제공하고, 6개월 1번 점검하고 경영자에게 보고하여 상시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함.

1-1. 직책자 평가기준표

관리감독자 평가기준

작성일 : 2024년 월 일

평가대상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6월 30일

1. 평가기준

양호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수립된 안전보건목표를 달성하고 재해 예방에 기여함
보통	법령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함
미흡	법령에 따른 업무를 일부 수행하지 않음

2. 평가표(안)

직책	성명	담당업무	평가		
			미흡	보통	양호
관리 감독자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지도·조언에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3. 평가점수 종합

점수총합	
개선사항	

1-2.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및 점검표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및 평가·개선 점검표

○ **사업장명 :**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1. 목표와 경영방침에 따른 이행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o안전보건 계획에 따른 이행 (실시시기, 지표 등에 따라 평가)					
o경영방침에 따른 이행					

2.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업무 충실 이행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o관리감독자 -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 - 작업장 정리·정돈 등					

3.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위험성평가)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o내부 절차에 따른 실시 - 위험성평가 방법 - 위험성평가 참여자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공지 - 기타					
o실시 시기 및 대상의 적정성 - 정기평가: 매년(계획에 따른 시기), 전체 작업 대상 - 수시평가: 아래 계획 실행 전 <수시평가 대상>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본부 전담조직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o실시 방법의 적정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실시 총괄·관리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교육 등					
o유해·위험요인 파악의 적정성 -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에 유해·위험요인 파악 누락이 없는지 확인					
o유해·위험요인 개선 수준 - 현장 점검을 통해 적정 개선여부 확인					

4. 종사자 참여 활성화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o내부 절차 운영 기반 - 익명 신고함 설치 상태 - 내부 직원에 참여절차 안내					
o제안제도 운영 - 종사자(도급·용역·위탁 포함)에 안내 - 주기적 제안내용 확인 및 적절한 조치					
o아차사고 발굴 제도 운영 - 종사자(도급·용역·위탁 포함)에 안내 - 주기적 내용 확인 및 적절한 조치					

5. 재해발생 및 급박한 위험대비 신속 대응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o대응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여부					
o비상조치계획에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및 비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상상황 발생별로 구분하여 수립					
o비상조치계획에 소속기관 근무환경 상 위험성이 높은 위험요인에 대해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o비상조치계획에는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인적·물적 자원)가 적절히 포함					
o비상조치계획에 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					
o비상조치계획에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이 적절히 구분					
o비상 시 즉각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충분히 마련되었고, 즉각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					
o비상상황에 대비한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마련					
o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 및 개선					

6. 안전보건 교육 실시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o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o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o안전보건관리체계(내부 절차·기준·매뉴얼) 교육					

7.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안전보건 관리체제	○ 안전보건총괄(관리) 선임 및 위촉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업무 부여 등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변경					
산업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관리, 법령 고지 등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산재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제출)					
	○ 법령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 사용 시 안전인증 취득 여부 *크레인,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보호구(안전화, 안전모 등) 등					
	○ 유해위험기계 등 안전검사 실시 *크레인, 압력용기 등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경고표지 부착·교육 실시					
	○ 석면함유 물질 자재에 대한 석면조사					
	○ 석면함유 물질 자재 해체제거작업 준수 (석면해체제거업자 도급 여부)					
근로자 보건관리	○ 작업환경 측정 및 일반건강진단					
안전보건기준	○ 작업장 및 통로 전도방지 조치 여부 * 미끄럼방지 조치(논슬림테이프 부착) 설치, 바닥 청결, 조도확보 등					
	○ 안전한 사다리 통로 확보 * 견고한 구조, 전도방지 조치,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이상 등					
	○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및 덮개 등 설치 여부					
	○ 높은 곳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여부 - 비계 설치 후 작업발판 조립, 이동식비계, 말비계 사용					
	○ 승강기 보수 작업 등 * 방호장치(출입문 인터록 장치 등) 정상 작동, 작업 시 전원 차단 후 잠금장치/표지판 부착 후 작업					
	○ 밀폐공간 위험작업 보건관리 * 사전허가(프로그램 작성), 출입금지 표지판, 농도측정, 환기,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감시인배치 등					
	○ 외벽 청소업무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 작업전 로프, 고리, 달비계 등 체결상태 확인, 로프 외 구명줄 설치 후 안전대 체결, 로프 및 구명줄					
	○추락 등 위험작업 근로장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위험기계 등의 전동기 회전체 등에 덮개 설치 여부					
	○전동기 콘센트 등 접지 연결 여부					
	기타 안전보건관련 사항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점검일자	. . .	점검자	

Ⅳ 향후 개선사항

□ 필수적 즉시 개선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분야별 개선사항

- (경영자리더십) 안전 및 보건 분야별로 안전보건 예산 실적을 정리하고, 내년도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수준이 "중(中)"이상인 사항에 대해서 이행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함.

- (근로자참여) 정기적으로 주1회 이상 TBM을 실시하고 작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은 안전보건 제안 창구를 마련하기 바람.

- (비상조치 계획) 사내외 비상연락망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점진적 개선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분야별 개선사항

- (비상조치 계획) 연1회 이상 화재, 지진 등 비상상황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보고서 작성하기 바람.

- (정기적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경영자에게 보고하기 바람.

- (정기적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시 반영하기 바람.

Ⅴ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 결과

구축기준	확인결과(√)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해당 없음
<1. 경영자 리더십>						
[1-1] 안전보건경영방침을 통한 경영자 의지 표명						
❶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모든 근로자(도급·용역·위탁 포함)의 안전보건 확보, 근로자 참여 활성화, 관련된 법규 준수에 관한 경영자의 의지가 반영된 방침 수립		√				
❷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방침에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표(인트라넷, 게시판 게시 등)		√				
[1-2]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❶ 사업장의 사업부서별 또는 작업단위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		√				
❷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 담당자, 예산 등을 포함하는 세부추진계획 수립			√			
❸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구성원 공개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			
[1-3] 안전보건 자원 배정 및 권한·책임						
❶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체계를 별도 구축하고 있거나, 종사자 각 구성원별 안전·보건 권한 및 책임 부여		√				
❷ 안전보건구축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 반영		√				
❸ 정부의 기술지도사업,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외부자원 활용방안 검토		√				
<2. 근로자의 참여>						
[2-1] 안전보건 정보 공개						
❶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위험성평가 결과, 안전보건 관련 회의 결과 공개·개시		√				
❷ 유해·위험기계·기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산업재해·아차사고 발생현황 등 관련 정보 공유		√				
[2-2] 근로자 참여 절차 및 문화 조성						
❶ 안전보건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근로자의 공식적인 참여 절차 운영		√				
❷ 안전신고 및 제안 등 안전보건 근로자 참여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및 조치결과 공개			√			
❸ 안전신고 및 제안 등 안전보건 근로자 참여에 대한 업무부담 또는 불이익 방지 조치			√			
❹ 하청 및 파견,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운영하는지						√
❺ 종사자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반기 1회 이상)		√				

구축기준	확인결과(√)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해당 없음
<3.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파악>						
[3-1] 위험요인 파악 이행절차						
❶ 효과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한 실시규정* 등 작성 * 목적 및 방법,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평가시기 및 절차, 근로자 참여 및 공유방법, 결과의 기록보존		√				
❷ 위험요인을 공정별·설비별·작업별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		√				
❸ 사업장 순회점검을 포함하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				
❹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위험요인별 위험성 수준 결정 및 우선순위 결정 실시 여부		√				
❺ 최초·정기·수시평가 또는 최초·상시평가를 절차에 맞게 실시		√				
❻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1회 점검 후 필요 조치 또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른 이행 및 경영층 보고		√				
[3-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❶ 산업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고용노동부 보고						√
❷ 산업재해 또는 아차사고 조사 절차 수립			√			
❸ 사고조사 시 안전보건담당자 및 해당 작업자 또는 동종유사 작업자 등의 참여			√			
❹ 조사결과,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여부에 대한 사업주/경영책임자 보고			√			
[3-3] 위험 기계·기구 및 유해인자						
❶ 사업장에서 보유한 위험기계·기구·설비 관리대장 및 관리방안 작성						√
❷ 동종업계 산업재해, 아차사고 발생 기계·기구·설비에 대해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 관리						√
❸ 사업장에서 보유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인간공학적 등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대장 및 관리방안 작성						√
[3-4] 화재·폭발·질식 등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						
❶ 5대 재해 유형(끼임·충돌·화재·폭발·질식)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절차 수립						√
❷ 비정형작업(청소·정비·점검 등)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
❸ 위험장소와 위험작업 조사 시 현장 작업자 참여						√
❹ 설비·생산공정 변경에 따른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에 대한 파악 실시						√

구축기준	확인결과(√)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해당 없음
<4.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4-1] 위험요인별 위험성 평가						
❶ 위험요인별 제거, 대체, 공학적대책, 행정적대책, 개인용보호구 순으로 개선방안 마련		√				
❷ 개선방안 마련 시 현장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등의 참여 여부		√				
❸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한 사업주의 검토 여부		√				
[4-2] 개선방안 이행 계획 수립						
❶ 위험유형별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담당자 지정, 개선예정일, 점검주기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이행계획 수립		√				
❷ 개선방안에 수반되는 예산·인력 등에 대한 배정방안 마련 및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검토		√				
❸ 개선방안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구성원 공유 및 이행 여부		√				
[4-3] 위험요인 확인·개선 결과의 공유						
❶ 위험요인 확인·개선 결과를 모든 구성원에게 작업전 안전점검 회의(TBM) 등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		√				
❷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근로자 교육 실시		√				
❸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종사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여부(직접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 받았는지 여부)						√
<5. 비상조치계획 수립>						
[5-1] 중대산업재해 조치매뉴얼 및 비상조치계획						
❶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조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고 이행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 * 매뉴얼 포함 내용: 작업중지, 근로자대피, 위험요인제거 등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조치, 비상연락체계, 해당작업중지, 노동관서 보고 등, 작업중지에 대한 불이익 조치금지 등		√				
❷ 끼임·충돌·화재·폭발·질식 등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 시나리오 및 비상조치계획 작성		√				
❸ 중대재해 시나리오 및 비상조치계획에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장자의 역할을 적절히 구분		√				
❹ 중대산업재해 시나리오 및 비상조치계획 매뉴얼을 구성원에게 교육을 실시			√			

구축기준	확인결과(√)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해당 없음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6-1] 도급·용역·위탁시 사업장 선정						
❶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평가·선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반기 1회 이상)						√
❷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대한 검토 기준 마련						√
[6-2] 안전보건 확보						
❶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있고,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며 수급인이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						√
❷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 실시						√
❸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실시 * 협의체,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훈련,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같은 장소에서 작업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조정 및 안전보건조치 확인, 합동 안전·보건점검						√
❹ 안전보건 확보대상이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에 방문하여 관리감독 하에 지속적인 작업을 하는 외부인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인지 여부						√
<7. 정기적 평가 및 개선>						
[7-1] 성과 평가 및 체계 점검·개선						
❶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성과평가하기 위한 절차 수립			√			
❷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계획에 따라 성과평가 실시(반기 1회 이상)			√			
❸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 및 점검 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개선시기, 담당, 예산·인력 배정안 등)을 마련하고 경영층에게 보고하고 근로자에게 전파				√		
❹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목표 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				√		

Ⅵ 부록

1. 관련 법령 및 주요 행정해석 · 판례

□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내용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조항	내용
제7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미 제출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75조)**

□ 행정해석(산재예방정책과-5210, 2019-10-25)

질의	답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에 대한 기준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을 모든 산업재해가 아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정한 취지는 일정 강도 이상의 산업재해를 발생 보고 대상으로 하려는 것인바, 3일 이상의 휴업은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한편,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의로 부분 또는 불연속 휴업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소견이 3일 이상의 휴업으로 진단하였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음.

□ 판례

사건번호	내용
청주지방법원 2021.8.11. 선고 2021고정14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중략)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7. 위 어린이집 근로자인 보육교사가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당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위 보육교사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중략)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7. 위 어린이집 근로자인 보육교사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페인트 작업을 할 당시 이동식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등 적절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주문 :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조항	내용
제2조 (정의)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판례

사건번호	내용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4.24. 선고 2023고단3139 (중처법 위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 등은 ①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②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한 뒤,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③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대표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인력을 구비하기 위한 필요 예산 편성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D 소속 종사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고 접지가 되지 아니한 가설 분전함에 전기기구인 철근절단기를 연결하여 철근절단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위 철근절단기에서 발생한 누전으로 피해자가 감전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종사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주문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필요 서식

(1) 안전보건제안서
(2) TBM 회의록
(3) 위험성 평가 3단계 판단법 결과서
(4) 산업재해조사표

1. 안전보건 제안서

안전・보건 제안서

작성일 : 0000년 00월 00일

1. 인적사항

○ 성 명 :

○ 부 서 :

○ 연락처 :

2. 유해・위험 내용

○ 관련 작업(공정)명 :

○ 현장사진:

○ 내용:

3 개선 제안사항

2. Tool Box Meeting 회의록

시행 일시	작업 전 안전점검 미팅내용		참석자 확인
	위험요인 및 개선 필요사항	개선대책	
	① ② ③	① ② ③	(서명) (서명) (서명)
	① ② ③	① ② ③	(서명) (서명) (서명)
	① ② ③	① ② ③	(서명) (서명) (서명)
	① ② ③	① ② ③	(서명) (서명) (서명)

3. 위험성 평가 3단계 판단법 결과서

■ 평가대상:　　■ 실시 일자:　　■ 평가자 :

번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수준 (상,중,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관련근거 (선택사항)
1							
2							
3							
4							
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1. 19.>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민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내국인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상용 []임시 []일용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그 밖의 사항 []			
	⑭근무형태	[]정상 []2교대 []3교대 []4교대 []시간제 []그 밖의 사항 []			
	⑮상해종류 (질병명)		⑯상해부위 (질병부위)	⑰휴업예상 일수	휴업 []일
				사망 여부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⑱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⑲재해발생원인		
Ⅳ. ⑳재발 방지 계획			

※ ⑳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기인물	□□□□□
	작업지역·공정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